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나550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영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음

담당변호사 강신범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15.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23541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30,154,6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28,036,42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제2의 가.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2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50,14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위와 같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주문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6행 아래에 “마. 원고는 2019. 6. 13. C을 채무자, 공영홈쇼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나항 기재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1773)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6. 18. 공영홈쇼핑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공영홈쇼핑의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금3213)으로 진행된 배당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에서 2020. 3. 20.경 19,990,892원을 배당받아 위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7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갑 제2, 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50,145,5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를 “50,145,56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19,990,892원을 배당받아 위 물품대금채권 원금은 30,154,668원이 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3~4행의 “원금 50,14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를 “원금 30,154,6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9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판사 황정수

[별지]

채권의 표시

양도인(채권자) : 주식회사

양수인(채무자) : 주식회사 공영홍요행

양도할 채권 :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2019.6.25.경 진행된 상품판매방송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으
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 채권 전부

끝.

